

프랑스 대혁명기 기념물보존 행정조직의 탄생과정 고찰

조용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제문화유산협동과 석사과정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제문화유산협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yjandy@nuch.ac.kr

국문초록

2023년 문화재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념들은 국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에서의 개념발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개념의 원산지로 주류를 이루는 유럽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를 선택하였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공화국을 설립한 이래로 일찍이 유럽의 기념물 개념에서 국민의 유산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역사 중 프랑스 대혁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 대혁명기 구체제가 붕괴되고 보호체계를 잃어버린 기념물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국민국가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본 연구의 탐구대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념물들의 보존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두 조직은 혁명과 전시상황 속에서 이념과 정치선전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기념물 보존활동에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지침서를 통하여 보존원칙을 수립하였고 기념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배포한 지침서 중 기념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민의 유산이라는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선구적이다. 이것은 이후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이 흐름 속에서 기념물, 역사기념물, 문화재, 문화유산으로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은 발전해나간다. 프랑스 혁명기의 역사는 구체제의 붕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전 체제의 기념물들을 새로운 보호체계 속에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분단국가로서 가치관의 혼란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제어 기념물, 역사기념물, 문화재, 문화유산, 박물관

투고일자 2022. 6. 15. | 심사일자 2023. 7. 31. | 게재확정일자 2023. 8. 22.





I. 머리말

2023년 현재 문화재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체제를 ‘국가유산’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기반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16일 공포되었다. 본법의 특징은 대표용어를 바꾸었다는 점이다. 대표용어를 바꾼 이유는 기존의 대표용어인 문화재는 과거, 사물, 재화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계승, 활용, 미래의 성격을 띤 유산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덧붙여 기존 문화재 체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입장과 그 영향을 받은 각종 언론사들이 내놓은 기사들을 보면서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문화재 개념은 본래 유럽이 원류이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적어도 19세기 중후반기부터 프랑스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관념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1830년대 프랑스에서 역사기념물 지정제도가 확립되고 관련 행정당국은 기념물들의 보존을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재산권 개념이 필요하였다. 1841년 공용수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공용수용 논리가 기념물에게도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흐름 상에서 공유재 성격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탄생한다. 당대 프랑스 법학자 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는 1887년 역사기념물보존법의 실현을 보고 앞으로 재산권의 관념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¹ 다만, 그는 표현에 있어서 예술재(propriété artistique)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오늘날 프랑스에서 흔히 쓰는 문화재(bien culturel)라는 용어의 대중화 시점은 연구가 필요하다. 레이몽 살레이유가 예술재를 논한 비슷한 시기인 1884년 프랑스

에서는 ‘사회재와 민주주의’라는 책이 출판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사례를 놓고 보면, 문화재는 사유재와 기념물 보존과의 갈등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온 혁신의 지혜이다. 문화재를 과거유물, 재화적 성격을 띠며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용어로 인식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유재와의 갈등과 타협은 문화유산 분야의 영원한 숙명과도 같고 그러한 숙명을 잘 보여주는 용어가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문화재와 더불어 기념물이라는 용어도 연구가 필요하다. 기념물은 유럽의 ‘Monument’ 용어에 대응하는 번역어로 대한민국의 현행 행정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념물은 기원전 로마의 기록물에도 보이는 단어로 굉장히 오래된 말이다. 1694년판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에 나와 있는 기념물의 뜻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이름난 사람 혹은 업적을 후세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흔적”이다.² 실제로 유럽에서의 기념물 용례를 보면, 기념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기념물은 사적지 성격의 터, 경관이 좋은 곳, 그리고 동식물 및 자연지물이 대상이다. 19세기 말경 프랑스에서도 기념물이 자연계로 갈래를 만들면서 자연기념물(monument naturel)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천연기념물에 대응하는 용어로 보인다. 다만, 현행 대한민국의 행정용어로서 기념물은 어떤 역사과정이 있었기에 사적지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문화유산과 관련한 용어들의 개념이해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쌓여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유산 분야의 중요한

1 Comité d'histoir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3. *1913 Genèse d'une loi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Mémoire des grandes lois patrimoniale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128.

2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이트, <https://www.dictionnaire-academie.fr/article/A1M0276>(접속일: 2023. 8. 15).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념이해에 다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념의 이해에 따라 용어선택이 달라지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럽의 것들을 참고해야 한다. 19세기 중후반기 이래 유럽이 무시할 수 없는 문명의 척도 역할을 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땅에도 유럽의 영향이 스며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이해의 시작점으로 프랑스 혁명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혁명으로 공화국을 설립한 이래 제정, 왕정, 공화국, 제정, 그리고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심각한 국론분열을 겪었다. 끝없는 국론분열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기념물을 국가통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였고 그만큼 사회의 요구에 따라 기념물의 개념은 발전해 나간다. 1830년대 프랑스에서는 기존 기념물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것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역사기념물(monument historique) 개념 및 관련 제도를 정립한다. 1887년에는 역사기념물 보존에 관한 법을 프랑스 최초로 제정하는데 성공한다. 이 법은 주변 유럽국가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있었다. 특히 역사기념물이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 수용되어 국제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20세기에 프랑스의 대중용어가 되는 문화재 및 문화유산(patrimoine culturel)의 등장시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역사기념물 개념은 기념물에서 문화재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확장되는 발전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혁명기 기념물보존 행정조직들의 탄생과정을 고찰하였다. 구체제가 붕괴한 이후

기존 기념물들의 보호체계가 백지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국민국가의 테두리 안에 어떻게 옛 기념물들을 다시 집어넣었는지가 탐구대상이다. 연구방법은 전적으로 1차사료들에 의존하였으며 이를 밑바탕으로 혁명기 기념물보존 행정조직들의 한계와 의의를 연구하였다.

II. 프랑스 대혁명기 기념물보존 행정조직의 변화상

1. 기념물위원회 행정조직의 탄생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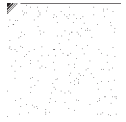
1) 국유재산 급증에 따른 기념물 보존문제의 대두

(1) 교회재산의 국유화

교회재산 국유화 문제는 1789년 8월 7일부터 국민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다. 논의의 발단은 재무장관 자크 네케르(Jacques Necker)가 요구한 차관이었다. 네케르는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기존 관행에 따라 3천만 리브르 상당의 차관을 요구하였고 국민의회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논의는 국가재정의 근본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왕실의 씬씀이와 같은 문제의식들이 여러 각도에서 나오게 된다. 논의 끝에 재정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교회재산의 국유화였다. 조셉-앙리(Joseph-Henri) 의원은 “이 재산들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재산들을 다시 돌려받을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교회와 수도원에 있는 은제품들을 “막대한 부이자 죽어있는 부”로서 몰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³ 다음날에도 교회재산 국유화 논의는 계속 이어진다. 라코스트(Lacoste) 후작 의원은 “지금 바로 국가의 수많은 권리들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이다.”라며 교회재산 국유화를 압박한다.⁴ 특히 이날은 봉건제의 특권을 폐지하는 초안을 논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교회재산의 국유화 문제는 전체적으

3 Réau, L., Fleury, M., Leproux, G.M. 1994. *Histoire du vandalisme*. Robert Laffont. p.366.

4 Dupont, P. 1875.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a 1860 - Première serie(1787-1799) Tome VIII - Du 2 mai au 15 septembre 1789*. Librairie Administrative. p.369.



로 구체제의 특권철폐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교회재산 국유화가 논의되었을 때, 세금화된 십일조와 같은 교회의 특권문제도 같이 다루어졌다.

1789년 9월 29일, 국민의회는 명령을 내려 국유화를 시작한다. “일부 국회의원의 제안과 여러 종교인들의 찬동에 따라서 국민의회는 주교, 사제, 성당참사회, 수도원 및 수녀원 상급책임자, 교회재산관리위원회, 평신도회는 성사(聖事)의 품위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은제품들을 가까운 조폐소로 가져올 것을 권장한다.”⁵ 11월 2일에는 교회가 가진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권리가 커진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11월 7일 탈레랑(Talleyrand) 의원은 의회에서 교회재산 국유화가 끼칠 앞으로의 파급력을 다음과 같이 예견한다. “되갚기를 전제로 봉건제 특권들을 폐지했을 때, 관련된 문서들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이제 접근하기 쉬워진 교회재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탈레랑은 봉건제 특권이 폐지되었을 때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교회를 대상으로 한 파괴행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는 단순히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해당 법안에서는 우선 고서류, 서적들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보존을 요구하였고 도난과 횡령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안 세 번째에서는 도난과 횡령을 방지하는 책임기관으로 재판부, 관련 행정당국, 시당국, 코뮌(Commune), 국민방위군을 책임주체로 명시하였다.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범법행위를 예방하고 국회에 통고할 수 있는 공권력을 부여하였다.⁶ 이렇게 국가의 재정수지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교회재산 국유화는 기념물들의 보존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2) 왕실재산의 국유화

왕실재산 국유화는 교회재산처럼 전면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이 겨냥하는 것은 구체제의 불합리한 특권과 사회구조였지 국왕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방 곳곳에서 봉건제의 잔재를 없애려 각 성들의 문서보관소들 불태웠을 때, 파괴는 ‘국왕만세’의 외침 속에서 이루어졌다.⁷ 루이16세는 자유를 되찾게 해준 고마운 왕으로서 그의 권위는 여전히 건재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회에게 권력의 중심점이 넘어가면서 왕의 권한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1789년 11월 9일 국민의회는 명령을 내려 왕의 공식칭호를 ‘프랑스인들의 왕’으로 바꾼다. 기존 전통적인 왕들의 칭호는 ‘프랑스와 나바르의 왕’이었다. 칭호를 바꾼 이유는 앞으로 국민국가의 성격을 띠게 될 국가체제와 어울리지 않는 옛 세계관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축출하기 위해서였다. 1791년 교황령 아비뇽을 병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루이 16세는 프랑스 중심의 단원화를 위한 국가재통합의 과정 속에서 ‘프랑스인의 왕’이라는 새로운 칭호 아래 입헌군주로 거듭난다.

1789년 시점에서는 아직 헌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국왕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물밑작업들은 이루어진다. 10월 2일 국민의회에서는 ‘상세르 지방(comté de Sancerre)을 중심으로 왕실 소유 영지들의 저장, 교환, 증여, 양도’를 조사하기 위한 영지위원회(Comité des Domaines)를 조직한다. 1789년 11월 13일 영지위원회가 올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역대 왕실재산에서 과연 양도불가능성(inaliénabilité)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 고찰하고 있다. 그 결과 보고서에서는 역사적으로 왕실재산의 양도불가능성을 천명

5 Duvergier, J.B. 1834. *Collection complète des lois, décrets, ordonnances, réglemens avis du Conseil d'état(De 1788 à 1830 Inclusivement, par Ordre Chronologique) TOME I.* Guyot Et Scribe. p.44.

6 Dupont, P. 1877.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 Première série(1787–1799) Tome IX – Du 16 septembre au 11 novembre 1789.* Librairie Administrative. pp.718~719.

7 Réau, L., Fleury, M., Leproux, G.M. 1994. *Histoire du vandalisme.* Robert Laffont. p.261.

한 칙령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쟁, 상속, 지참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수없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즉, 이 보고서는 앞으로 왕실재산을 국민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었다. 1790년 4월 10일 영지위원회에 올린 보고서에서는 한층 더 왕실재산 국유화에 속도를 보이며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한다. 제1조에서 “왕실재산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왕이 받아들인 국민대표들이 내린 명령(décret)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왕실재산 양도의 길을 피하기 시작한다.⁸

하지만 위의 4월 10일 보고서 중에서 영지위원회는 왕실재산의 일정부분에는 절대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확실하게 왕권의 영역에서 국민들과 군주들에게 신성시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여기는 행정가나 그 소유자조차 양도하거나 건드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양도불가능성이 인정되는 영역들이 있고 이는 왕권과 뗄 수 없는 필수요소로서 보존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는 왕실 소유의 성들을 열거하면서 매각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베르사유, 폰텐블로, 콩피에뉴(Compiègne) 성 등은 매각대상에 제외되었다. 반면 “비용만 많이 드는 쓸모없는 것으로서 특히 슈아지(Choisy), 마드리드, 블루아(Blois), 뮈에트(Muette), 방센(Vincennes) 등 기타 성들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일부 성들은 보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선별작업은 영지위원회가 상기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안 제5조에서 반영되었다. “전하께서 남겨두기를 바라시는 모든 성, 영지, 왕실저택, 그 외의 것들은 매각과 양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전하께서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 보

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 위원단이 꾸려질 것이다.” 결국 왕실재산의 국유화 문제도 선별을 통한 기념물들의 보존문제와 엮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왕실기념물들 보존문제는 교회의 것보다 다소 늦은 1792년 8월 10일 텔르리궁이 습격당한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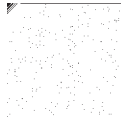
(3) 국유재산의 매각과 기념물 선별의 필요성

교회재산과 왕실재산의 국유화가 기념물 보존문제를 강하게 불러일으킨 근본원인은 국유화의 목적이 매각이었기 때문이다. 1789년 12월 19일, 국민의회는 특별기금 조성에 관한 명령을 내린다. 본 명령의 제1조에서 “애국성금, 현 법령으로 발생할 매각대금, 국가의 모든 특별 수입원을 재원삼아 특별기금을 만든다. 이 기금은 지불기일이 되었거나 미납상태인 채무를 상환하고 국회가 변제를 선언한 모든 채무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 2조에서 “교회소유지의 상당부분은 전하께서 계속 향유하기를 바라시는 왕궁과 숲을 제외한 왕실 소유지와 함께 4억 가치의 대금을 충족할 때까지 매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4조에서 “이 특별기금을 바탕으로 한 장당 1000리브르의 가치를 가진 연리 5퍼센트의 아시냐를 상기의 매각대금을 충족할 때까지 발행한다.”고 밝혔다.⁹ 특히 이 아시냐(assignat)가 기념물 보존문제에 끼친 영향이 크다. 아시냐는 일종의 담보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담보물들이 국유화시킨 교회 및 왕실재산들이었다. 즉 아시냐의 발행빈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수록 아시냐의 담보물로서 사방으로 팔려나간 기념물들의 보존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국유재산 매각과정 속에서 기념물들을 따로 떼어

8 Dupont, P. 1881.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 Première série(1787–1799) Tome XII – Du 2 mars au 14 avril 1790*. Librairie Administrative. pp.633~642.

9 Dupont, P. 1878.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 Première série(1787–1799) Tome X – Du 12 novembre au 24 décembre 1789*. Librairie Administrative. p.681.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나온다. 1790년 1월 12일 화가 두아앵(Doyen)은 국유화된 은기들을 선별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많은 기념물들이 파리 시청사 건물에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사도 하기 전에 파괴되어버립니다. 이 중 일부는 그 손실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진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는 이런 현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도와 매각절차 상에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 같은 해, 3월 20일 앙리 그레구아르(Henri Grégoire)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는데 제1조에서 “시 공무원은 해당 종교시설이 관리 및 책임지고 있는 은제품, 주화, 제의실 물품, 책보관장소, 장서, 고문서, 메달, 그곳의 가장 귀중한 기물의 상태와 간략한 설명문을 양식에 따로 구애받지 않고 부담없이 작성한다.”라고 밝히고 있다.¹¹ 이는 일단 국유화된 것들을 근본적으로 먼저 파악하라는 현황 조사의 제안이었다. 1789년 11월 13일에도 교회재산 현황 조사를 위한 명령이 나왔으나 이때와의 차이점은 그때에는 기념물들을 조사대상으로 특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시간이 갈수록 기념물만을 따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보존문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양도위원회 조직과 기념물위원회 탄생

1790년 3월 22일 국민의회는 양도위원회를 조직한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도위원회는 국유 및 교회재산 매각을 감독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같은 해 5월 14일과 17일 국민의회는 명령을 통해 국유재산의 매각절차 및 평가절차들을 구체화시켜 나간다. 문

제는 그중에서 기념물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을 위한 선별과정이 여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각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기념물들이 멸실당하는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은 기념물보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고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1790년 10월 4일, 프랑수아-마리 뤼토(François-Marie Puthod) 의원은 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건물, 소득, 동산, 부동산의 현황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명문, 금문, 비문, 무덤, 그 외 다른 기념물들의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뤼토의 의견에 힘을 실으며 알렉상드르 드 라메스(Alexandre de Lameth) 의원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종교건물을 철거할 때, 그곳이 품고 있는 귀중한 기념물들은 파괴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념물은 교회재산을 매각할 때, 그 값어치에 아무런 가치도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과학의 진보, 그리고 특히 역사의 지식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없앨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뤼토의 제안을 양도위원회에 보낼 것을 요구한다.¹²

10월 6일에도 앙투안 비에야르(Antoine Vieillard) 의원이 각종 교회에 소장되어 있는 회화와 조각품들에 대한 보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는 수많은 걸작품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화가와 조각가들에서 위원을 선출하여 가치있는 것들을 평가, 선별, 보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한다.¹³ 10월 13일에는 탈레랑 의원은 교육문제와 엮어 기념물 보존문제도 헌법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끝으로 헌법위원회는 공교육 권한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범죄행위의 것들을

10 Clay, R.S. 1999. "SIGNS OF POWER: ICONOCLASM IN PARIS, 1789-1795". University of London, pp.61~62.

11 Dupont, P. 1881.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 Première série(1787-1799) Tome XII - Du 2 mars au 14 avril 1790*. Librairie Administrative, p.267.

12 Dupont, P. 1884.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 Première série(1787-1799) Tome XIX - Du 16 septembre au 23 octobre 1790*. Librairie Administrative, pp.434~435.

13 Ibid., p.472.

주의해야 합니다. 귀중한 기념물들이 여러 곳에서 약탈당하고 부당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예술 걸작품들은 최고의 교육수단입니다. 여기에 깃들여 있는 재능은 이어지는 세대들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 속에서 자유가 깨어나기 때문에 예술 걸작품들은 종교급으로 보존되는 것이 마땅합니다.”¹⁴ 탈레랑 의원이 교육문제와 엮어 기념물 보존문제를 다룬 것은 기념물의 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써 보존의 당위성을 끌어올린 것이다. 1790년 10월 내내 높아진 기념물보존의 목소리는 결국 11월 8일 전문가위원회(Commission des savants)의 첫 모임으로 성과를 이룬다. 이 위원회가 곧 기념물위원회이다.

2. 기념물위원회 행정조직

1) 기념물위원회 초기활동

기념물위원회는 초기 명칭이 보여주듯 양도위원회의 국유재산 매각행정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기념물들을 선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집단이다. 하지만 단순히 양도위원회의 보조자로서 존재하기에는 전국적으로 기념물보존에 닥친 현실문제가 방대하였고 점차 전문가위원회는 독자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띠며 기념물위원회로 거듭난다. 기념물위원회의 연혁은 1792년 출간된 ‘기념물위원회, 1790년 11월 설립 이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는 책에서 잘 소개되어 있다. 책의 첫머리에 “자유와 평등을 향한 사랑이 명령한 피할 수 없는 파괴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과학, 문학, 예술의 기념물들을 생각이 짧은 광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했다. 이런 실상이 역사에 필요하고 예술에 유용한 모든 대상물들을 골라낼 수 있는 보존위원회(Commission préservatrice)의 구상을 나오게 했다.”고 밝히면서 탄생배경을 이야기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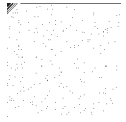
위원회의 초기활동은 우선적으로 각 위원들의 지식과 관심사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것이었다. 역할분담이 완료된 이후, 프랑스 전역에 널린 모든 유형의 부(richeesse)를 알기 위하여 다음과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 대상으로 프로방스 혹은 교회의 역사가 담긴 책, 잡록, 회고록, 기행문, 유람기, 몽포콩(Monfaucon)과 켈뤼스(Caylus)가 쓴 고대 관련 저서와 같은 것들이었다. 다음으로 필사본, 인쇄본, 대리석 석조물, 청동상, 메달들의 분포현황을 특수목적의 지도 위에 일람표(relevé)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 지도는 향후 위원회의 참고지침으로 만드려는 목적이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모든 도(département)와 구(district)에 기념물들의 보존가치를 일깨워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회의 목적은 여전히 프랑스가 갖고 있지 못하는 문학지도(Topographie littéraire)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⁵ 즉, 위원회의 초기활동은 전국의 기념물들의 분포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초기의 조사대상은 도서류쪽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념물위원회 조직확장

기념물위원회 조직확장의 결정적인 계기는 1792년 8월 10일 텔르리궁 습격사건이었다. 이날, 950명 규모의 스위스 용병단, 여든네 살의 오귀스탱-조셉 드 마이(Augustin-Joseph de Mailly) 전 원수를 비롯한 충직한 신민들이 파리 시민들한테 궤멸당하면서 사실상 군주제는 이때 종식되었다. 이후 왕실재산의 처리문제가 불거진다. 이전 국민의회는 영국의 왕실비(civil list) 제도를 도입하여 왕실의 재원을 보장해주었다. 1791년 5월 26일 입법의회가 내린 명령 제3조만 봐도 왕실

14 Ibid., pp.588~589.

15 Convention Nationale. 1792. COMMISSION DES MONUMENS. Exposé succinct des travaux de la commission depuis son établissement en novembre 1790. pp.2~4.



재산은 상당부분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르사유, 마를리(Marly), 뫼동(Meudon), 생-제르맹-앙-레(Saint-Germain-en-Laye), 생-클로드(Saint-Cloud)에 있는 저택, 건축물, 용지, 토지, 주변 땅, 농지, 나무, 숲, 크고 작은 공원들, 마찬가지로 랑부이에(Rambouillet), 콩피예뉴, 퐁텐블로에 속하는 같은 성격의 것들, 그리고 세브르(Sèvres) 도자기 공장의 건물과 토지는 왕에게 남겨둔다.”¹⁶ 하지만 텔리리궁 습격 이후, 왕실재산 속 기념물들의 보존문제가 급부상하기 시작한다. 다음날, 의회에서는 국왕을 전복시킨 분위기에 고취되어 파리 공공장소에 세워진 왕들의 조각상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런 파괴 분위기 속에서 르불(Reboul) 의원은 의회와 시당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왕실가구보관소의 목록들을 검증하고 모든 왕실 동산물 재산들의 목록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림, 조각상, 그 외 미술에 의미가 있는 기념물들을 중시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훗날 기념물위원회에 통합되기 때문에 기념물위원회의 조직 확장에 도움을 준다.

텔리리궁 습격 이후, 공화국으로 향하는 정부의 기념물 정책에는 파괴와 보존이 공존한다. 이 양면성 속에서 기념물위원회가 균형추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792년 8월 14일 입법의회에서 내린 명령에서 그 존재감을 볼 수 있다. 제1조부터 3조까지 기념물들의 파괴와 관련된 조항들만 나오다가 제4조에서 “기념물위원회는 예술 본연에 의미를 갖는 대상의 보존을 단호하게 책임져야 하며 그 대상물에 무엇이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입법기관에 목록을 제출해야한다”며 균형을 잡아준다.¹⁷ 1792년 9월 15일, 르불은 본인이 탄

생시켰던 특별위원회를 기념물위원회에 통합시킬 것과 내무부장관이 본 업무를 관할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날, 입법의회는 르불의 제안을 공식화한다. 명령 제3조에서 “내무부 장관은 예술과 과학분야에 매년 할당될 재원확보, 교회, 국유건물, 망명자들의 건물에 모아져 있는 그림, 조각상, 그 외 미술과 관련되는 기념물들의 조사 및 보존을 위한 활동지원, 파리의 박물관과 도에 세워질 박물관 사이의 소장품 배분작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내무부를 위원회에 밀착시킨다. 같은 날, 또 다른 명령에서 왕실기념물들의 보존업무를 공식적으로 기념물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제1조에서 “기념물위원회는 구왕실 건물 및 국유건물에 있는 조각상, 단지, 및 기타 기념물들 중에서 예술을 드높여주고 교육목적으로 보존할 만한 것들의 분류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⁸

이렇게 확장된 기념물위원회는 1792년 10월 18일 국민공회에서 내린 명령에서 체계화된다. 본 명령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헌의회 및 입헌의회에서 예술과 과학 기념물들의 보존을 위해 설립한 위원회들은 앞으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한다. 이 위원회는 3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업무의 속도를 위해 몇 개의 분과로 나눌 수 있다. 위원회의 역할은 이전 법령에 따른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술과 과학을 드높이는데 보존할 만한 기념물들을 이해하고 그 보존에 신경 쓰는 일이다.” 제4조에서는 기념물위원회의 본부를 공화국박물관이 세워질 루브르궁으로 정하였다. 제5조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시 곳곳의 기념물보관소에 있는 기념물들의 안전을 책임질 관리자 인력의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하였다. 제6조에서는 기념물위원회는 국유재

16 Dupont, P. 1887.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à 1860 – Première série(1787–1799) Tome XXVI – Du 12 mai au 5 juin 1791*. Librairie Administrative. p.472.

17 Duvergier, J.B. 1834. *Collection complète des lois, décrets, ordonnances, règlements avis du Conseil d'état(De 1788 à 1830 Inclusivement, par Ordre Chronologique) Tome IX*. Guyot Et Scribe. p.305.

18 Duvergier, J.B. 1834. *Collection complète des lois, décrets, ordonnances, règlements avis du Conseil d'état(De 1788 à 1830 Inclusivement, par Ordre Chronologique) Tome IX*. Guyot Et Scribe. pp.457~458.

산 및 망명자들 재산의 양도를 책임지는 재정위원회, 공교육위원회, 내무부와외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¹⁹ 이로써 기념물위원회는 초창기 양도위원회의 보조자 위치를 넘어서 공교육위원회 및 내무부와외의 협력관계 속에서 기념물 분야를 전담하고 대표하는 구심점으로 거듭난다.

3. 예술임시위원회 행정조직

1) 예술임시위원회 등장배경

예술임시위원회의 등장배경은 1793년 8월 8일 프랑스의 모든 아카데미를 폐지한다는 국민공회 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 아카데미에 대한 불만은 이미 혁명 초부터 표출하였다. 1789년 12월 19일, 예술가 출신 혁명가들이 만든 예술코뮌(Commune des arts)의 회장직에 있던 레스투(Restout)는 기존 왕립아카데미들을 규탄한다. “그들이 행사하는 독재는 소수의 특권층 예술가들의 손아귀에 모든 권력을 두는 폭군 체제입니다.”²⁰ 레스투를 필두로 예술코뮌은 왕립아카데미를 폐쇄적인 특권집단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혁명의 이념 아래 사라져야 할 적폐로 여겼다. 1791년 9월 8일 내무부는 ‘자유와 살롱’을 개최하며 기존 아카데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윽고 1793년 8월 8일, 의원이자 화가인 자크-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가 의회에서 아카데미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다. 그는 교수들의 이권다툼으로 교육제도의 효율성이 파괴된 기존 아카데미 시스템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인류와 정의의 이름으로, 예술과 젊은이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이 산송장과 다름없는 아카데미들을 파괴하고 폐지시키시다. 이것들은 더이상 자유의 정권 아래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²¹ 다비드의 제안에 따라 기존 아카데미들은 모두 폐지된다.

아카데미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수 세월을 왕실의 비호 속에 성장해 온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물건들의 보존문제가 생겨난다. 1793년 8월 12일, 국민공회는 내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아카데미들이 있던 장소들에 봉인장(scellé)을 붙이고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조각상, 서적, 고문서 및 기타 물품들은 내무부가 임시보존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8월 15일, 소장 물품들의 목록작성과 여러 곳의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된다. 1793년 9월 1일, 내무부는 이 위원회를 확장시켜 36명 규모의 예술위원회(Commission des arts)를 조직한다. 하지만 예술위원회의 업무는 기념물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두 위원회 간 역할분담과 근본적인 존립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1793년 11월 12일, 정부가 생-폴(Saint-Paul)과 생-쉴피스(Saint-Sulpice) 교회의 재물 중에서 매각과 보존대상을 판가름하기 위한 12명의 위원회를 조성할 때까지만 해도 기념물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입법위원회, 공안위원회, 조사위원회, 공교육위원회와 더불어 위원회당 2명씩 위원을 선출하는 참여조직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인 1793년 12월 18일, 기념물위원회는 해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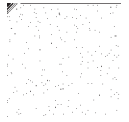
2) 박물관보존소 흡수

박물관보존소 역시 예술임시위원회로의 통합에 중요한 요소이다. 박물관보존소는 박물관위원회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박물관위원회는 루브르궁의 박물관 만들기를 위한 실무조직이었다. 1792년 9월 21일, 의회는 왕실 소유 저택에 있는 그림과 같은 예술

19 Duvergier, J.B. 1834. *Collection complète des lois, décrets, ordonnances, règlements avis du Conseil d'état(De 1788 à 1830 Inclusivement par Ordre Chronologique) Tome V*. Guyot Et Scribe. p.23.

20 Réau, L., Fleury, M., Leproux, G.M. 1994. *Histoire du vandalisme*. Robert Laffont, p.521.

21 Monnier, G. 1995. *L'Art et ses institutions en France. De la Révolution à nos jours*. Folio histoire. p.25.



관련 기념물들을 루브르로 옮기도록 명령을 내린다. 제1조에서 “기념물위원회는 지체없이 구왕실 및 다른 국유건물에 있는 그림 및 예술과 관련한 다른 기념물들을 루브르 보관소로 옮기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제2조에서 베르사유 공원에 있는 조각상들은 이전대상에서 제외시켰다.²² 그리고 1792년 10월 1일, 점차 소장품이 방대해지는 루브르 보관소를 박물관으로 만들 목적으로 그 실무를 담당할 6명 규모의 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이 실무조직이 박물관위원회 시초이다. 루브르의 박물관 만들기는 1793년 7월 27일 명령에서 공식화된다. 제1조에서 “내무부는 오는 8월 10일 국민공전과 루브르를 잇는 갤러리에 공화국박물관을 열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고 밝힘으로써 박물관 개관을 확실시한다. 본 명령 제2조와 3조에서 기념물위원회의 감독 아래, 뽀띠 조귀스탱(Petits-Augustins) 보관소, 구왕실 저택, 성, 망명자들의 정원 등지에 있는 그림, 조각, 단지, 값비싼 가구류, 대리석 조각, 고대 흉상 등을 루브르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다만, 여기서도 베르사유의 것들은 열외로 삼았다.²³ 박물관위원회의 역할은 기념물위원회에서 옮겨온 것들은 인수받아 관리 및 보존하는 것이었다. 루브르궁은 예정대로 8월 10일 ‘공화국중앙예술박물관’으로 개관되었지만 이후 박물관위원회의 존립이 문제시된다. 1793년 12월 18일, 다비드는 의회에 박물관위원회 폐지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올린다. 박물관위원회 위원들의 복원능력도 없는 전문성을 지적하면서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존소(conservatoire)로 개편하자는 제안이었다. 결국, 1794년 1월 16일 박물관위원회는 해체되고 이후 설립된 박물관보존소는 2월 6일 예술임시위

원회로 통합된다.

3) 예술임시위원회 조직체계

1793년 9월 1일 설립된 예술위원회는 12월 18일 기념물위원회를 흡수하면서 예술임시위원회로 거듭난다. 1794년 2월 6일, 예술임시위원회는 박물관보존소까지 통합하며 조직체계를 완성한다. 예술임시위원회는 12개 분과로 나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연사(8명), 물리학과 천문학(5명), 화학(4명), 해부학(5명), 예술과 장인기술(3명), 항해와 지리학(3명), 전쟁무기와 요새(2명), 고대유물과 메달(1명), 사서(4명), 그림과 조각(1명), 건축(1명), 다리와 도로(4명), 음악(2명)으로 총 43명 위원이 임명되었다.²⁴ 예술임시위원회는 공교육위원회가 위치하는 호텔 드 브리온느(Hôtel de Brionne)에서 자리잡았고 회의도 공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주재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위원회와 예술임시위원회 간 관계가 긴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기념물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임시위원회는 노골적으로 “기념물위원회가 걸어왔던 길을 뒤따랐다.”고 밝혔으며 본인들은 그 일을 “이어받고 완성시킨다.”라며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 기념물위원회의 후신이기 때문에 기존 형성되었던 기념물보관소들도 예술위원회가 담당하였다. 보관소는 대표적으로 뽀띠 조귀스탱, 넬(Nesle) 보관소가 있다. 전자는 교회에서 유래한 기념물들이 보관되어 있고 후자는 망명자들 재산에서 몰수한 기념물들이 보관되었다. 그 외에 과학기기와 기계들을 보관하는 장소 2곳, 도서류를 보관하는 장소 8곳, 고문서를 보관하는 장소 1곳, 악기를 보관하는 장소 1곳이 있었다.²⁵

22 Duvergier, J.B. 1834. *Collection complète des lois, décrets, ordonnances, règlements avis du Conseil d'état(De 1788 à 1830 Inclusivement, par Ordre Chronologique) Tome IX.* Guyot Et Scribe. p.472.

23 Villot, F. 1865. *Notice Des Tableaux Exposés Dans Les Galeries Du Musée Impérial Du Louvre.* Charles de Mourgues Frères. p.40.

24 Tuetey, L. 1912. *Procès-verbaux de la Commission temporaire des arts. Tome I.* Imprimerie Nationale. p.35.

25 Tuetey, L. 1912. *Procès-verbaux de la Commission temporaire des arts. Tome I.* Imprimerie Nationale. pp.11~12.

4) 예술임시위원회 조직확장

기념물위원회의 계승자로서 조직을 만들어간 예술임시위원회는 혁명기 반달리즘과의 투쟁에서 가장 핵심 기관이었다. 1794년 8월 31일 앙리 그레구아르가 반달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내세우며 정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예술임시위원회를 치켜세우는 글이 등장한다. “예술임시위원회는 지질 줄 모르는 열정으로 국가를 빈곤하게 하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무지, 탐욕, 반혁명 정신으로부터 기념물들을 쟁취하여 건져내었다.”²⁶ 예술임시위원회도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졌다. “시민정신과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필요한 대상물들을 보존하고 조사하는 동안, 예술에 완전히 무지한 시민들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미신, 독재, 봉건제의 표식이라는 이유로 기념물들을 쓰러뜨리고 있다.” 예술임시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반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행정력을 확장하려고 줄곧 노력하였다. 1794년 11월 25일, 건축가 뒤푸르니(Dufourmy)는 “각 도를 돌아다니면서 악의와 무지로부터 파괴위험에 처한 기념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1795년 2월 23일, 예술임시위원회는 지방으로의 행정력 확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교육위원회에 제안한다. 이 제안은 “프랑스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훑쳐려고 하는 약탈의 낡은 적발하고, 보물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무식함을 일깨워주고, 여전히 만연해 있는 파괴적인 발광을 멈추는데 전념하는 요원” 혹은 위원회를 만드려는 계획이었다. 공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지만 “파리와 그 주변 도에 국한되어 외진 곳에 있는 도들과는 서신만 주고받을 뿐이다.”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지방으로의 행정력 확장에는 결국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하지만 1794년 11월 5일, 예술임시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조직확장을 이룬다. 위원

회의 비중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서신교환과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난다. 급증하는 예산과 경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회계부서와 다른 정부위원회를 비롯하여 지방의 도 및 구와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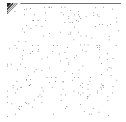
5) 예술임시위원회 해산

1795년 8월 22일 프랑스 정부는 국민공회에서 총재정부(Directoire)로 권력이 옮겨간다. 정치권력의 중추가 바뀔 때 국민공회의 조직들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총재정부는 1795년 10월 2일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국민공회가 폐지하였던 부(ministère) 체제를 되살린다. 그리고 국민공회가 만든 각종 위원회들은 청산대상이었고 공교육위원회와 함께 예술임시위원회는 폐지의 길을 밟는다. 1795년 12월 19일 마지막 회의가 열리고 5일 뒤 내무부장관 피에르 베네제슈(Pierre Bénézech)는 예술임시위원회로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는 예술임시위원회의 그동안의 업적과 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을 실을 가치가 있다. “시민들이여, 저는 방금 남은 일들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예술임시위원회 수를 줄였습니다. 좋은 행정의 원칙 그리고 현재의 경제사정이 이와 같은 인원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달리즘으로부터 잔해들을 거둬들인 당신들의 열정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공화국에 봉사하였으며 영광을 안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열정이 필요할 때 새로운 일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당신이 대중에게 인정받은 자격들을 조금도 잇을 수가 없습니다. 곧 다시 조직될 새로운 예술임시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지명을 알리는 특별 편지들이 갈 것입니다.”²⁸ 이로써 12월 26일 마지막 회

26 Grégoire, H. 1794. *Rapport sur les destructions opérées par le Vandalisme, et sur les moyens de le réprimer*. Imprimerie Nationale. p.2.

27 Tuetey, L. 1912. *Procès-verbaux de la Commission temporaire des arts, Tome I*. Imprimerie Nationale. pp.18~21.

28 Ibid., p.33.



의록 정리를 끝마치고 예술임시위원회 조직은 해체된다. 1795년 10월 2일 정부조직을 개편한 명령을 보면 거기에 내무부의 권한사항으로 공교육, 박물관, 그 외 국유컬렉션, 국가축제만 명시되어 있고 기념물 자체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직은 기념물만을 단독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혁명기 이후로 기념물을 조직명으로 내세우는 행정조직이 다시 등장하는 때는 1830년대이다.

Ⅲ. 프랑스 대혁명기 기념물보존 행정조직의 한계와 의의

1. 프랑스 대혁명기 기념물보존 행정조직의 한계

1) 공화국의 정치선전과 행정력의 정치이념화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 모두 혁명을 통해 탄생한 조직으로서 태생적으로 혁명정부의 방향과 이념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즉 위원회 내부적으로 특정 기념물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혁명이념과 충돌할 경우 기념물보존은 뒷순위로 밀려난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분보존을 위한 타협책을 꾀하는 것뿐이었다. 정부의 기념물 파괴를 공인하는 정책 앞에 위원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은 생드니 성당 안 왕묘 유린 사건이다. 1793년 7월 31일, 의원 바레르(Barère)는 공안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생드니 성당 파괴를 주창한다. “왕조를 쓰러뜨린 8월 10일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는 기념일날에 생드니에 있는 사치스러운 영묘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공화국의 강력한 손으로 이 잔재하는 묘비를 가차없이 지워버려야 하며 왕들, 곧 이 소름끼치는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는 영묘들을

파괴해야 합니다.”²⁹ 국민공회는 바레르의 제안을 받아들여 생드니 및 그 외 지역에 있는 왕들의 묘를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국민공회는 개묘를 담당할 위원회를 꾸린다.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제르맹 푸아리에(Germain Poirier) 신부로 그는 기념물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념물위원회가 담당한다. 생드니 성당의 유린은 1793년 8월 6일부터 시작하여 1794년 1월까지 계속된다. 결과적으로 왕, 왕비, 왕자, 공주, 충신, 그리고 생드니 성당의 신부들까지 대략 170개의 무덤들이 유린당하고 유해들은 인근 구덩이에 생석회와 함께 묻힌다. 생드니 성당의 개묘작업은 무기제작용 금속류 공출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들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덤에 팔려 나온 금속류 켄트거리들도 상당수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생드니 성당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제르맹 푸아리에에는 다음과 같은 한탄을 하기도 한다. “6일부터 시작하여 파괴가 끝난 날인 8일 저녁때, 파괴된 기념물의 수는 51개에 달하였다. 12세기의 작품들은 단 사흘 만에 파괴되었다.”³⁰ 정부의 공인된 파괴 속에서 그나마 뿌피 조귀스탱 보관소의 책임자였던 알렉상드르 르누아르(Alexandre Lenoir)의 개인적인 노력 덕분에 왕묘의 석관 및 딸린 석조장식들 일부는 보존될 수 있었다.

1794년 2월 6일, 예술임시위원회 조직체계를 잡을 때, 위원들에게는 시민증서가 주어졌다. 시민증서는 공화국에 충성하는 시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이 발급 이면에는 구체제의 기념물들을 보존하는 행위가 극단적인 공화주의 단체들에게 자칫하면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다른 예로, 한 수도사 출신은 왕실문장이 새겨진 성모 마리아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사형당한다.³² 당시 프랑스

29 D'Heylli, G. 1872. *Les tombes royales de Saint-Denis*. Librairie Générale. p.86.

30 Réau, L., Fleury, M., Leproux, G.M. 1994. *Histoire du vandalisme*. Robert Laffont. p.288.

31 Clay, R.S. 1999. 'SIGNS OF POWER: ICONOCLASM IN PARIS, 1789-1795'. University of London. p.160.

32 Ibid., p.85.

는 전시상황이었던 만큼 혁명이념에의 구속은 극단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기념물보존에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념물위원회가 남긴 기록 중에 생드니 성당의 기념물들을 보존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역사를 위한 것이지 왕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술임시위원회가 남긴 기록 중에는 “롬(Romme)의 자코뱅주의와 마시외(Massieu)의 그릇된 생각”과의 충돌을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고 “위원회 스스로 일부 구성원들의 심하게 오염된 생각에서 비롯된 파괴적인 견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보인다.³³ 즉, 위원회 조직 내부에서도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기념물보존의 원활한 행정에 막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전문 보존행정인력의 문제

1790년 이래로 기념물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조직들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들의 전문성 수준은 높지 않았다. 예로, 1792년경 프랑수아 자크마르(François Jacquemart)라는 문인이 국유화된 교회를 둘러보면서 남긴 기록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나는 한 교회에서 일꾼들이 관리자와 떨어져 자기들끼리 장식품들을 배열하면서 당연하듯이 교회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림이든 조각이든 개개 단편들을 없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들은 무더기로 서로가 포개진 채 쌓여 있었다. 아 세태여! 아 세습이여! 왜 이런 무식한 자들에게 이런 물건들을 다루게 하는 것인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나마 그들의 어리석음을 감추어줄 것이다. 시

간이 넉넉하다면 국민의회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도에서 이것들을 감독하게 하고 시당국이 책임자들을 더 잘 뽑을 것이다.”³⁴ 1793년경, 생-르미(Saint-Remi) 성당의 왕실문장 및 표식을 지우는 작업에 고용된 드루아르(Drouart)라는 담당자가 남긴 작업 기록을 보면, 단어의 철자들이 많이 틀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로, 중세시대 대귀족을 뜻하는 ‘pair’를 아버지를 뜻하는 ‘père’로 표기하는 식이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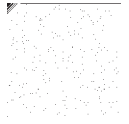
위의 사례를 단순한 맞춤법의 실수라고 이해하더라도 1793년 12월 18일, 전문성을 문제시하며 박물관 위원회의 철폐를 요구한 다비드의 제안서를 통해서도 당시 행정인력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비드는 “내무부의 의도는 지키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박물관을 맡기고, 그림에 거리를 두는 사람들에게 기념물 복원을 맡기고,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일을 차가운 수학자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라며 박물관위원회 폐지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현재 그림 복원가들을 대상으로 시험장을 연다면, 아마 질서, 원칙, 다져진 기초가 없어서 수상이 남발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전혀 없는 행정조직의 실태를 강하게 비꼬았다.³⁶ 기념물위원회의 활동 시기 의회에서 내린 각종 명령을 보면, 기념물 관리인력 채용에서 우선시되는 자질은 책임감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였다. 현실적으로 당시 기념물보존은 집단광기 속 의도적인 파괴행위로부터 기념물들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기념물보존을 둘러싼 국가의 행정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복원(restauration)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 이에

33 Tuetey, L. 1912. *Procès-verbaux de la Commission temporaire des arts. Tome I*. Imprimerie Nationale. pp.8~9.

34 Jacquemart, N.F. 1792. *Remarques historiques et critiques, sur les abbayes, collégiales, paroisses et chapelles supprimées dans la ville et faubourgs de Paris, d'après le décret de l'Assemblée Constituante du 11 Février 1791*. Imprimerie de la Société Bibliographique. p.199.

35 Réau, L., Fleury, M., Leproux, G.M. 1994. *Histoire du vandalisme*. Robert Laffont. p.410

36 Tuetey, A. · Guiffrey, J. 1910. *La Commission du Muséum et la création du Musée du Louvre(1792-1793)*. Daupéley Gouverneur. pp.354~356.



따라, 다비드의 제안처럼 전문성이 중시되었고 지키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더이상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된다.

2. 프랑스 대혁명기 기념물보존 행정조직의 의의

1) 지침서를 통한 기념물 보존원칙의 수립

기념물위원회와 예술임시위원회 두 조직 모두 지침서만들기는 중점사업이었다. 기념물위원회가 남긴 기록 중에 지침서에 대한 글이 나온다. “위원회는 그림, 조각, 테생, 채색유리, 태피스트리, 그리고 가치가 높아 주목할 만한 공예품들을 보존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³⁷ 그리고 각 도와 구에 지침서를 보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술임시위원회에서도 지침서를 중시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술임시위원회는 지방으로 행정력을 넓히기 위한 행정인력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대신에 전국에 지침서를 배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타협책으로서 중요하였다. 예술임시위원회는 그 의의를 두고 전국에 ‘지침서가 품은 정신을 싹트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³⁸ 두 위원회가 활동하던 시절 만들어진 지침서들은 최소 5개가 확인된다. 1790년 12월 15일, 1791년 3월 20일, 1791년 5월 15일, 1791년 7월 1일, 공화국 2년(1794년)에 채택된 지침서가 전해진다. 다만, 공화국 2년 이전 지침서들은 지침서 끝에 제작주체가 종교위원회 및 양도위원회로 나온다. 이는 초기 기념물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공화국 2년 지침서에는 예술위원회와 공교육위원회가 제작주

체로 나온다.

1790년 지침서³⁹는 가장 초기 단계의 것으로 보존 대상의 범주를 7개로 구분하였다. 1. 필사본-고문서-인장, 2. 인쇄본, 3. 메달-화폐-금석문-용기-옛 측량기구-무구류-무덤-기타 고대유물, 4. 그림-테생-판화-지도-태피스트리-모자이크-채색유리 5. 기계류, 6. 자연사 관련 물건, 7. 유럽 및 타대륙 이민족의 몸치장-복장-도구류이다. 각 장에서는 각 범주의 기념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존해야 하는지를 서술하였다. 1790년 지침서에서는 분산을 막는 것에 보존목적의 중점을 두었다. 이는 점차 번져나가는 반달리즘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지침서에서는 특별히 각 도의 행정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잘 대처해주기를 주문하고 있다. 본 지침서의 의의는 기존 단순히 국유화를 알리는 봉인장 부착을 통한 보존방식에서 더 나아가겠다는 점이다. 즉, 국유화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보존대상인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고 보존방법의 일반원칙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791년 3월 지침서⁴⁰는 성궤(Châsse), 성물함(Reliquaire), 그 외 금은세공품에 대한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에서는 국유화된 상기의 종교유물들을 다루는 잣대를 9개조로 수립하였다. 제2조에서 1300년 이전에 제작한 모든 기념물은 보존된다며 절대적인 보존영역을 만들었다. 특히 2조는 보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연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조는 예술, 4조는 교육, 6조는 역사, 풍속(moeurs), 관습(usages)에

37 Convention Nationale. 1792. COMMISSION DES MONUMENS. Exposé succinct des travaux de la commission depuis son établissement en novembre 1790. p.15.

38 Tuetey, L. 1912. Procès-verbaux de la Commission temporaire des arts. Tome I. Imprimerie Nationale. p.21.

39 원문: Instruction concernant la conservation des manuscrits, chartes, sceaux, livres imprimés, monuments de l'antiquité & du moyen âge, statues, tableaux, dessins & autres objets relatifs aux beaux arts, aux arts mécaniques, à l'histoire naturelle, aux mœurs & usages de différents peuples, tant anciens que modernes, provenant du mobilier des maisons ecclésiastiques, et faisant partie des biens nationaux.

40 원문: Instruction concernant les châsses, reliquaires autres pièces d'orfèvrerie provenant du mobilier des maisons ecclésiastiques, destinés à la fonte.

의미가 있는 것들은 보존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치평가의 기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본 지침서는 여러 각도에서 가치관을 설정함으로써 기념물보존의 사각지대를 좁혀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가치의 상호보완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1791년 5월 지침서⁴¹는 국유화된 전국 도서관 안의 도서관 관리방법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지침서이다. 지침서에는 사서들이 도서들을 분류하고 목록만들기를 할 때, 그 표준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표기법을 통일시키고 있고 카탈로그의 양식은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지침서에는 본 작업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조건이 나온다. 해당 인력에게는 최소 문학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과 라틴어 이해가 요구되었다. 본 지침서는 도서관 기념물 관리방법의 전국표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791년 7월 지침서⁴²는 그림, 조각을 대상으로 현황과 설명을 간략히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이다. 그림의 경우는 주제, 작가, 높이, 너비, 재질을 기본으로 삼았다. 특히 모방작의 경우, 모방작의 화풍, 역사주제, 원작의 명성에 주목하도록 했다. 조각의 경우도 주제, 작가, 재질, 비례 그리고 여러 조각이 한 무리를 이루는 경우 그 전체구성을 다루도록 했다. 이 외에 그림, 조각 중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라도 소장처와 더불어 간략한 기록을 남기도록 지시하였다. 말미에는 1790년 12월 15일 지침서를 참고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침서 사이의 상호보완체계를 보여준다.

공화국 2년(1794년) 지침서⁴³는 1790년 지침서와 같이 기념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침서이다. 1790년 지침서와 비교해보면, 본 지침서는 보존대상 기념물들의 범주가 크게 확장되었다. 1790년 지침서에서는 범주가 7개였는데 공화국 2년의 것은 13개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자연사, 2.물리학, 3.화학, 4.해부학-의학-외과학, 5.기계-예술-장인기술, 6.지리학-항해술, 7.요새-공병술, 8.고대유물, 9.도서관 보관소, 10.그림-조각, 11.건축, 12.음악, 13.다리-도로이다. 범주의 유형도 다양해졌는데 1790년 지침서는 순전히 동산물 대상이었다. 그러나 본 지침서에서는 부동산까지 넘어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확장의 배경에는 교육의 수단으로서 기념물의 가치관이 두드러진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실제로 지침서 내용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교보재로서 기념물을 바라본다. 이런 맥락 속에서 다리-도로와 같은 실용성이 강한 부동산이 보존의 대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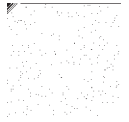
2) 기념물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재확립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하는 날 파리 시민들은 그 영광을 신에게 바쳤다. 다음날, 노트르담 성당에서는 미사와 테데움 찬가가 울려 퍼지고 이곳에서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임명하는 행사를 치렀다. 18일 날, 생트-주느비에브(Sainte-Geneviève) 성당을 방문한 여성들은 바스티유 함락을 감사하며 그곳 성물에 헌화하는 종교의식을 치렀다. 8, 9월에도 여러 성당에서는 국민방위군 깃발을 축성하는 행사가 열렸고 9월

41 원문: Instruction pour procéder à la confection du catalogue de chacune des bibliothèques sur lesquelles les directoires ont dû ou doivent incessamment apposer les scellés.

42 원문: Instruction pour la manière de faire les états et notices des monuments de peinture, de sculpture, gravures, dessins, etc. provenant du mobilier des maisons ecclésiastiques supprimées et dont l'envoi est demandé promptement par les comités réunis d'administration ecclésiastique et d'aliénation des biens nationaux

43 원문: Instruction sur la manière d'inventorier et de conserver dans toute l'étendue de la République, tous les objets qui peuvent servir aux arts, aux sciences et à l'enseignement.



에 파리 시민들은 생-쉴피스 성당의 은제 성모 마리아상을 생트-주느비에브 성당까지 모시고 행진하는 종교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다. 군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도 건재하였다. 즉, 바스티유 함락 이후에도 종교와 왕실을 핵심축으로 하는 기존 가치관들은 붕괴되지 않았고 관성적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점차 국민의회를 필두로 한 입법부의 권력이 고등법원이나 국왕 밑의 행정기관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치관에 흠집이 나기 시작한다. 의회는 국민국가와 새로운 법 테두리 안으로 국왕 및 종교권력을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구질서의 저항이 일어난다. 특히 1790년 7월 12일 성직자들을 의무적으로 국민국가, 법, 왕에게 충성명세를 하도록 한 신법에서 가장 거세게 일어난다. 결국 신질서와 구질서 간의 대립은 사회분열로 이어졌다. 그 외중에 프랑스 국내문제에 교황 및 주변 군주국들의 이해관계도 얽히면서 신질서를 따르는 시민들은 구체제의 산물들을 경멸, 혐오, 파괴하기 시작한다.

구체제 가치관의 붕괴 속에서 구체제의 기억을 담고 있는 기념물들은 온전할 수가 없었다.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구체제 기억은 없어져야 할 역겹고 소름끼치는 기억이었으며 그 기억의 응집체인 기념물들은 파괴의 대상이었다. 구체제의 가치관이 파괴된 상태에서 옛 기념물들은 그 기념물성을 부정당한다. 이는 당대 기록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1790년경, 브르통(Breton)이라는 시민이 오베르(Aubert) 신부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생드니 성당의 기념물성이 부정당하는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오래된 기념물은 이제 자유민이 된 프랑스인들에게는 그저 옛 전제정의 미개함, 모욕적이고 잔혹한 봉건제의 기억으로 세부설명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뒤엎어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오만

을 떨며 이곳에 있는 이 음산한 무덤들은 잘게 쪼개져 날아빠져 잘려나간 고딕 십자가 받치에 옮겨져 집어던져질 것입니다....”⁴⁴ 비슷한 시기 베르사유의 기념물성이 부정당하는 글도 있다. “세계의 모든 공화주의자들은 금으로 뒤발한 전제정의 파편들을 짓밟기 위하여 베르사유에 성지순례를 의무적으로 오게끔 해야 한다.” 그러면서 베르사유는 평등하고 자유롭고 도덕적이고 기쁨에 찬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⁴⁵

위의 두 기록에 나오는 생드니 성당과 베르사유 사례처럼 구체제의 기념물들은 기념물성을 부정당하였다. 하지만 기념물성이 부정당했어도 이것이 꼭 기념물들의 전면적인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생드니 성당의 왕묘는 1793년 정부의 주도 아래 파괴당하였지만, 반면에 베르사유는 오히려 정부의 특별한 취급 속에서 보존될 수 있었다. 즉, 구체제의 가치관이 붕괴되었지만 그 틈 속으로 새로운 가치관은 탄생하였고 전이 과정에서 일부 기념물들은 살아남아 새로운 보존인식 속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공백을 메꿔 기념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 존재가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이다. 새로운 가치관의 체계는 예술임시위원회가 발행한 공화국 2년 지침서에서 윤곽을 드러낸다. “이것들은 이제부터 공교육에 종사할 것이다. 입법가들이 철학을 갖게 하고, 행정가들을 일깨워주고, 농부들은 박식하게 하고, 위인들을 기리는 것을 뜻깊게 해줄 천재성을 예술가들에게 부여하고, 교수들에게는 실용성을 갖게 하고, 끝으로 교육자들에게는 폭군에 대한 무자비한 적수이자 공화국을 수호하는 굳건한 지킴이를 키워낼 힘차고 간단명료한 방법들을 알려줄 것이다.”⁴⁶ 여기에서 공화국의 존립을 떠받들어주는 공교육의 한 축으로

44 Breton. 1790. *Lettre à M. l'Abbé Aubert*. Petites affiches de Paris. pp.45~46.

45 Lenotre, G. 1936. *La vie à Paris pendant la Révolution*. Calmann-Lévy. p.246.

46 Vicq d'azyr, F. · Poirier, D.G. 1794. *Instruction sur la manière d'inventorier et de conserver dans toute l'étendue de la République, tous les objets qui peuvent servir aux arts, aux sciences et à l'enseignement*. Imprimerie Nationale. p.3.

서 기존 기념물들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술임시위원회는 지침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념물들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선구적인 역사였다고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공화국 2년 지침서에 나오는 표현 중 “이 모든 부는 대중들의 것이다.”에서도 그런 노력이 엿보이며 “여기서 무관심은 범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가족의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고 그 대가족은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적들이 비겁하게 내쳐버린 이 집안에서 당신은 이 유산의 일부를 발견할 것이다. 적들에 의해 아주 잔인하게 능욕당한 이성을 위하여 그것들을 가치있게 하시오. 모든 수상쩍은 손길들을 멀리하고 국가가 본인에게 맡긴 이 보물들에 진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⁴⁷ 여기서 적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맥락을 볼 때, 반달리즘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지침서의 ‘가치있게 하라’는 말을 통해서도 구체제의 붕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앞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자 과제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지침서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유산을 뜻하는 ‘heritage’를 쓴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대가족’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유산’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유산’과 ‘대가족’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과 구체제 기념물 사이의 적대감을 없애고 관계를 역전시켜 오히려 국민의 것으로서 발상을 뒤집어엮은 것이다. 지침서에서는 ‘대가족’의 ‘유산’으로서 개개인의 마음 속에 상속자로서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심어 넣어 구체제 기념물을 국민의 유산으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반달리즘의 구렁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또 다른 혁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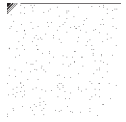
IV. 맺음말

1913년 “프랑스 역사기념물 보존의 기원(1790-1830)”이라는 책을 저술한 프레데리크 뤼케르(Frédéric Rücker)는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를 두고 “당시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이 두 조직은 그들의 임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였다.⁴⁸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 모두 반달리즘의 구렁속에서 기념물들을 계속 기념물들로 유지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였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새로운 국민국의 틀 안에 옛 기념물들이 일부나마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들의 역사는 단순히 프랑스의 과거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가치관의 변화는 항상 유동적이고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발생한다.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가치를 담고 있는 구헌물들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뿐 아니라 소련의 옛 기념물 파괴행위, 중국의 문화대혁명, 메이지유신 일본의 폐불훼석(廢佛毀釋) 등 사례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IS의 시리아 고대 유적 파괴행위 등 동시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근래에는 극단적인 환경단체들이 유명 미술관의 걸작품들을 대상으로 테러행위를 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파괴행위가 싹트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혁명기 반달리즘과 유사한 망령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혁명기 기념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던 두 조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두 위원회의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열어지기는 해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의 선례가 되어 그들이

⁴⁷ Ibid, p.3.

⁴⁸ Gautherot, G. 1914. *Le vandalisme jacobin*. Beauchesne,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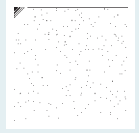
했던 반달리즘 타파, 보존 및 복원원칙 수립, 새로운 가치관 만들기에 관한 고민은 후대사람들이 계속 이어간다. 특히 예술임시위원회가 기념물들을 승화시켜 국민의 유산으로 만들려고 했던 바람은 앞을 내다보는 길잡이였다. 이들은 반달리즘의 구렁 속에서 국민의 유산을 향한 기념물들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고 그 흐름에 따라 기념물들의 개념은 발달하고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19세기 역사기념물 용어의 대중화가 대표사례로 공화국에 도취되었던 역사가관이 유연해지면서 혁명기 파괴의 대상이 되었던 구체제의 산물들을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830년대 역사기념물 제도가 확립되고 1880년대 관련 보존법제정에 성공한다.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이 역사는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새로운 유산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국민의 유산으로 새로운 지평을 연 혁명기 프랑스의 역사는 참고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념물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역사기념물로 개념이 발전되어 나가는 토대를 만든 프랑스 혁명기의 역사는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 변동이 더 극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사회의 가치관이 급변하면 문화유산을 떠받드는 역사, 예술 등의 가치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에 편입이 되지 못한 일부 유산들은 보호 테두리에서 소외된다. 우리의 경우, 만약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실현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잊혀져 남긴 유산들을 아우를 수 있느냐가 한 시대의 과업이 될 것이다. 그 시점에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유산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유산 관련 용어들의 개념발전의 역사 맥락을 알아야 하며, 이를 잣대로 삼아 우리 역사 속에서 선조들은 윗세대에게 물려받은 옛것들의 영세불망(永世不忘)을 위해 어떤 보존노력들을 했는지 그 계보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외의 비교 잣대로

서 프랑스 혁명기부터 시작하는 국민의 유산으로 향하는 프랑스 기념물의 여정은 우리에게 연구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Breton, 1790, *Lettre a M. l'Abbe Aubert*. Petites affiches de Paris, pp.45~46.
- Clay, R.S. 1999, 'SIGNS OF POWER: ICONOCLASM IN PARIS, 1789~1795', University of London, pp.61~62, 85, 160.
- Comite d'histoire du Ministere de la Culture. &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3, *1913 Genese d'une loi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 – Memoire des grandes lois patrimoniales*. La Documentation francaise, p.128.
- Convention Nationale, 1792, *COMMISSION DES MONUMENS. Expose succinct des travaux de la commission depuis son etablissement en novembre 1790*, pp.2~4, 15.
- Duvergier, J.B. 1834, *Collection complete des lois, decrets, ordonnances, reglemens avis du Conseil d'etat(De 1788 a 1830 Inclusivement, par Ordre Chronologique) Tome I*. Guyot Et Scribe, p.44.
- Duvergier, J.B. 1834, *Collection complete des lois, decrets, ordonnances, reglemens avis du Conseil d'etat(De 1788 a 1830 Inclusivement, par Ordre Chronologique) Tome IV*. Guyot Et Scribe, pp.305, 457~458, 472.
- Duvergier, J.B. 1834, *Collection complete des lois, decrets, ordonnances, reglemens avis du Conseil d'etat(De 1788 a 1830 Inclusivement, par Ordre Chronologique) Tome V*. Guyot Et Scribe, p.23.
- Dupont, P. 1875,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a 1860 – Premiere serie(1787~1799) Tome VIII – Du 2 mai au 15 septembre 1789*. Librairie Administrative, p.369.
- Dupont, P. 1877,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a 1860 – Premiere serie(1787~1799) Tome IX – Du 16 septembre au 11 novembre 1789*. Librairie Administrative, pp.718~719.
- Dupont, P. 1878,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a 1860 – Premiere serie(1787~1799) Tome X – Du 12 novembre au 24 decembre 1789*. Librairie Administrative, p.681.
- Dupont, P. 1881,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a 1860 – Premiere serie(1787~1799) Tome XII – Du 2 mars au 14 avril 1790*. Librairie Administrative, p.267.
- Dupont, P. 1884,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a 1860 – Premiere serie(1787~1799) Tome XIX – Du 16 septembre au 23 octobre 1790*. Librairie Administrative, pp.434~435, 588~589.
- Dupont, P. 1887, *Archives Parlementaires de 1787 a 1860 – Premiere serie(1787~1799) Tome XXVI – Du 12 mai au 5 juin 1791*. Librairie Administrative, p.472.
- D'Heylli, G. 1872, *Les tombes royales de Saint-Denis*. Librairie Generale, p.86.
- Gautherot, G. 1914, *Le vandalisme jacobin*. Beauchesne, p.13.
- Gregoire, H. 1794, *Rapport sur les destructions operees par le Vandalisme, et sur les moyens de le reprimer*. Imprimerie Nationale, p.2.
- Jacquemart, N.F. 1792, *Remarques historiques et critiques, sur les abbayes, collegiales, paroisses et chapelles supprimees dans la ville et faubourgs de Paris, d'apres le decret de l'Assemblée Constituante du 11 Fevrier 1791*. Imprimerie de la Societe Bibliographique, p.199.
- Lenotre, G. 1936, *La vie a Paris pendant la Revolution*. Calmann-Lévy, p.246.
- Monnier, G. 1995, *L'Art et ses institutions en France. De la Revolution a nos jours*. Folio histoire, p.25.
- Reau, L., Fleury, M., Leproux, G.M. 1994, *Histoire du vandalisme*. Robert Laffont, pp.261, 288, 366, 410, 521, 516.
- Tuetey, A. · Guiffrey, J. 1910, *La Commission du Museum et la creation du Musee du Louvre(1792~1793)*. Daupeley Gouverneur, pp.354~356.
- Tuetey, L. 1912, *Proces-verbaux de la Commission temporaire des arts*. Tome I. Imprimerie Nationale, pp.8~9, 11~12, 18~21, 33, 35.
- Vicq d'azyr, F. & Poirier, D.G. 1794, *Instruction sur la maniere d'inventorier et de conserver dans toute l'etendue de la Republique, tous les objets qui peuvent servir aux arts, aux sciences et a l'enseignement*. Imprimerie Nationale, p.3.
- Villot, F. 1865, *Notice Des Tableaux Exposes Dans Les Galeries Du Musee Imperial Du Louvre*. Charles de Mourgues Freres, p.40.
-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이트, <https://www.dictionnaire-academie.fr/article/A1M0276>(접속일: 2023. 8. 15.)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Monument Conservation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CHO Younghoon Master's course,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Stud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KIM Youngjae* Professor,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Stud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kyjandy@nuch.ac.kr

Abstract

In 2023,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is transforming a system that has been in existence for the past 60 years. In these circumstances, an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uch changes is intended to start the study of the historical context in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cultural heritage. The employment of imported concepts of heritage created the demand for understanding at least the original contexts. Many European concepts have been introduced. In this study, the French Revolution is selected as the starting point for historical research on conceptual development. France opened a new horizon to national heritag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French Revolution placed monuments denied by the collapse of the Ancien Régime back into the boundaries of protection. In this process, the Commission des Monuments and the Commission Temporaire des Arts were created. There were limits to conservation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the revolution and war. However, it is meaningful in that they established conservation principles with instructions and created new value for looking at monuments. It was pioneering in that it demonstrated the perspective of national heritage. This is significant because the top flow of conceptual development has led to a *monument historique*, *bien culturel*, and *patrimoine culturel* in France. This history provides a universal essence and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as a divided country

Keywords Monument, Monument historique, Cultural property, Cultural heritage, Museum

Received 2023. 6. 15. | Revised 2023. 7. 31. | Accepted 2023. 8. 22.

